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682

발의연월일: 2022. 7. 27.

발 의 자:서영교·신정훈·양기대

유정주 • 윤준병 • 이개호

이용빈 · 임오경 · 임호선

전혜숙 · 최인호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,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,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토록 하는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일몰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.

이러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규정과 함께 현행법에서는 85%의 감면율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두 고 있음.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은 면제된 취득세나 재산세의 1 5%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.

하지만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이중고를 겪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재정이 더욱 열악해지고, 이로 인해 사회복지 시설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우 려가 있는 상황임. 이에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, 이를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려는 것임(안 제22조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조 제2항 본문,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"제20조제1호"를 "제20조제1호, 제22조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7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	제22조(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
감면) ① 「사회복지사업법」	감면) ①
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	
업(이하 이 조에서 "사회복지	
사업"이라 한다)을 목적으로	
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	
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	
는 단체(이하 이 조에서 "사회	
복지법인등"이라 한다)가 해당	
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	
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	
해서는 취득세를 <u>2022년 12월</u>	<u>2027년 12월</u>
31일까지 면제한다. 다만, 다음	31일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	
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	②
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	
직접 사용(종교단체의 경우 해	
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	
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	

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 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부 동산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) 에 대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 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 및 「지방세법」 제 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 설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. 다만, 수익사업 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 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 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.

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 세를,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 는 주민세 사업소분(「지방세 법」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및 종업

2027년 12월 31일
③

원분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. 다만,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.

④ (생략)

⑤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사업소분(「지방세법」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)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.

⑥ (생략)

제177조의2(지방세 감면 특례의 저제한)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(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

<u>2027년 12월 31일</u> -	
<u>.</u>	
④ (현행과 같음)	
⑤	
<u>2027년 12월 31일</u>	
<u>.</u>	
⑥ (현행과 같음)	
제177조의2(지방세 감면 특례의	
제한) ①	

면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(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)을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(생략)
- 2. 제7조부터 제9조까지, 제11 조제1항, 제13조제3항, 제16 조, 제17조, 제17조의2, <u>제20</u>조제1호, 제29조, 제30조제3항, 제35조의2, 제36조,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, 제50조, 제55조, 제57조의2제2항(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), 제57조의3제1항, 제62조, 제63조제2항·제4항, 제66조, 제73조, 제76조제2항, 제66조, 제77조제2항, 제82조, 제84조제1항,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

·
1. (현행과 같음)
1. (60 20)
2
□.
<u>利20</u>
<u>제20</u> 조제1호, 제22조제1항 및 제2
<u>제20</u> 조제1호, 제22조제1항 및 제2
<u>제20</u> 조제1호, 제22조제1항 및 제2 항
<u>제20</u> 조제1호, 제22조제1항 및 제2
<u>제20</u> 조제1호, 제22조제1항 및 제2 항
제20 조제1호, 제22조제1항 및 제2 항
제20 조제1호, 제22조제1항 및 제2 항
<u>제20</u> 조제1호, 제22조제1항 및 제2 항
<u>제20</u> 조제1호, 제22조제1항 및 제2 항

른 감면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